

한국인정지원센터 공고 제2016-34호

녹색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

2016. 07. 20



녹색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5**서 문**

1. 녹색경영체제(녹색경영시스템) 인증은 조직이 자신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경영시스템 측면을 녹색경영을 위한 조직의 방침 및 목표에 따라 실행하고 있음을 보증하는 수단이다.
2. 이 기준은 녹색경영체제 인증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녹색경영체제 인증기관은 이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경영시스템 인증의 적격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운영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은 국제표준인 ISO/IEC 17021-1:2015(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에 기초한다.
5. KS Q ISO/IEC 17021에서 사용된 용어 “경영시스템”은 “녹색경영체제” 또는 “녹색경영시스템”으로 해석·적용하며, 이 기준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은 녹색경영체제(GMS)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6. 이 기준에서 전반적으로 사용된 “~하여야 한다”라는 용어는 강제적 준수사항이다. 한편, 이 기준에서 사용된 “~(야) 할 것이다”라는 용어는 강제적 준수사항은 아니나, 인정기관에서 제시한 지침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인증기관이 인정기관 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인증기관에서 취한 해결방안이 이 기준의 해당 조항 및 인정기관의 취지를 동등한 방식으로 만족시킨다는 것을 인정기관에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의 유지 또는 취득이 허용된다.

녹색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5**목 차**

1. 적용범위
2. 참고표준 및 적용문서
3. 용어 정의
4. 원칙
5. 일반 요구사항
6. 조직구조에 대한 요구사항
7. 자원에 대한 요구사항
8.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
9. 프로세스에 대한 요구사항
10. 인증기관의 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부속서 A] 지식 및 숙련도/기량 요구사항

[부속서 B] 평가방법의 예 (참고사항)

[부속서 C] 적격성 결정 및 유지를 위한 프로세스 흐름의 예 (참고사항)

[부속서 D] 바람직한 개인의 행동 (참고사항)

[부속서 E] 심사 및 인증 프로세스 (참고사항)

[부속서 F] 인증기관의 인증수행범위

[부속서 G] 인증심사일수

부 칙

녹색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5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녹색경영체제 인증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가 녹색경영체제 인증업무의 수행능력과 신뢰성을 인정기관으로부터 입증 받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2. 참고표준 및 적용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명시되어 있는 인용표준에 대해서는 언급한 표준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인용표준에 대해서는 최신판(모든 수정사항 포함)을 적용한다.

2.1 참고 표준

ISO/IEC 17000 적합성 평가 - 용어 및 일반 원칙

ISO/IEC 17021-1:2015 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IAF Mandatory Documents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7001 녹색경영시스템 - 제1부 : 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7002 녹색경영시스템 - 제2부 : 녹색경영 성과평가

KAB-R-01 품질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ISO/IEC17021-1:2015에 근거한)

2.2 적용 문서

이 기준과 함께 다음의 KAB 규정 및 규칙이 함께 적용된다.

KAB 인정등록가이드 I(KAB-G-01)

KAB 불만 및 이의처리규칙(P-20)

인정기준 적용지침(KAB-A-01 및 KAB-A-02)

3. 용어 정의

KAB-R-01의 3항의 모든 조항과 다음의 용어정의를 적용한다.

비고 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에 사용된 용어 “경영시스템 또는 경영체제”는 이 기준에서는 “녹색경영체제”로 대체한다.

녹색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5

- 3.1 녹색경영(Green management) :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이하 “조직“이라 한다)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 3.2 녹색경영체제(Green management system) : 조직이 녹색경영을 도입하여 실행함으로써 자원·에너지, 온실가스, 환경 및 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 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 적합하도록 구축한 체제

4. 원칙

KAB-R-01의 4항의 모든 조항을 적용한다.

5. 일반 요구사항

KAB-R-01의 5항의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6. 조직구조에 대한 요구사항

KAB-R-01의 6항의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7. 자원에 대한 요구사항

7.1 인원의 적격성

KAB-R-01의 7.1항의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7.2 인증 활동에 관련된 인원

KAB-R-01의 7.2항의 모든 요구사항과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7.2.1 계약검토 수행 인원

녹색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5

인증기관은 다음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계약검토 수행 인원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1) 학력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2) 직무경력

인증업무 관련하여 최소 2년간의 직무경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3) 녹색경영 교육·훈련

다음의 교육·훈련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a) 녹색경영 원칙, 적용방법 및 조직 운영상황의 이해
- b) 환경오염예방, 자원·에너지, 온실가스, 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분야에 대한 일반적 지식
- c) 녹색경영체제 관련 표준의 이해
- d) KS Q ISO 19011에 제시된 지침에 근거한 심사원칙, 절차 및 프로세스의 이해

(4) 적격성

다음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량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실증하여야 한다.

- a) 녹색경영체제 범주 및 부문에서의 신청조직 분류
- b) 신청 제품, 프로세스 및 실행의 이해
- c) 녹색경영체제 심사원의 적격성 및 요구사항에 따른 배치
- d) 인증심사일수(부속서 H 참조) 요구사항에 따른 결정
- e) 계약검토와 관련된 인증기관의 방침 및 절차

7.2.2 인증 승인을 결정하는 인원

인증기관은 인증 승인을 결정하는 인원 중 최소한 1명은 심사원에게 요구되는 학력, 녹색경영 교육·훈련, 심사 훈련 및 직무경력과 동일한 적격성을 보유하고 인증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갖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7.2.3 심사원

인증기관은 다음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녹색경영체제 인증 심사원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녹색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5

(1) 학력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이 학력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2년제 대학졸업의 경우 2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 4년 이상 기업, 공공기관, 단체 등에서 직무경력이 있는 경우 학력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

(2) 직무경력

기업, 공공기관, 단체 등에서의 최소 5년(2년제 대졸은 7년, 고졸은 9년)간의 직무경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직무경력은 환경, 자원·에너지, 온실가스 또는 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 등의 경영분야와 관련한 업무에서 최소한 4년의 직무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인증심사 교육·훈련

인정기관이 인정한 자격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된 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하여 다음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a) 녹색경영 성과지표 프로세싱의 원칙 및 검증방법
- b) 에너지 검토 및 베이스라인의 수립 및 검증방법
- c) 온실가스 정량화 및 인벤토리 검증방법
- d) 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위한 조직의 특성 및 의사소통
- e) 녹색경영체제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 f) 기타 녹색경영체제 관련 기술적·환경적 운영측면
- g) KS Q ISO 19011에 근거한 심사 기법
- h) 녹색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및 성과평가기준

(4) 심사경력

- a) 최근 3년 이내에, 심사팀장으로서 적격성을 갖춘 심사원의 지휘 및 지도 하에, 심사원 훈련자로 녹색경영체제 전 과정 심사에 최소 6회, 총 30일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비고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적합성평가/심사를 심사원으로서 4회 20일 이상 수행한 자에 대해서는 녹색경영체제 전 과정심사에 a)항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최소 2회, 총 10일 이상의 심사경력을 추가하는 경우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b) 심사원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최근 3년 이내에, 최소 2회의 녹색경영체제 적합성평가/심사

녹색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5

에 참여하여야 한다.

7.2.4 기술전문가

기술전문가는 심사대상 조직의 산업부문 및 프로세스 또는 그 부문에 해당하는 기술적·환경적 운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전문기술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7.2.5 심사원 확보

인증기관은 [부속서 F]의 인증수행범위별로 1명 이상의 심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7.3 개별 외부 심사원 및 외부 기술전문가의 활용

KAB-R-01의 7.3항의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7.4 인원에 대한 기록

KAB-R-01의 7.4항의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7.5 외주처리

KAB-R-01의 7.5항의 모든 요구사항과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7.5.1 녹색경영체제 인증기관의 인증활동 일부에 대한 외주처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외주처리가 부득이 한 경우 인증기관은 외주범위 등 해당 외주기관에 대한 정보를 인정기관에 제공하고 인정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에 수행하여야 한다.

8.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

8.1 공개 정보

KAB-R-01의 8.1항의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8.2 인증 문서

KAB-R-01의 8.2항의 모든 요구사항과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녹색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5

8.2.1 인증기관은 녹색경영체제 인증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조직에게 환경경영체제(KS I ISO 14001) 및 녹색경영체제에 부합한다는 인증문서를 각각 제공하여야 한다.

8.2.2 녹색경영체제 인증만료일자는 인증이 결정된 날로부터 3년이나, 환경경영체제(KS I ISO 14001) 인증고객으로서 녹색경영체제 추가요구사항에 대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환경경영체제 인증만료일자로 한다.

8.2.3 인증문서에는 사업장 별 인증범위가 명확히 기술되어야 하며, 녹색경영체제 인증의 범위는 환경경영체제(KS I ISO 14001)의 인증된 분야로 한정한다.

8.3 인증에 대한 언급 및 마크의 사용

KAB-R-01의 8.3항의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8.4 기밀성

KAB-R-01의 8.4항의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8.5 인증기관과 클라이언트 간의 정보교환

KAB-R-01의 8.5항의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9. 프로세스에 대한 요구사항

9.1 인증이전의 활동

KAB-R-01의 9.1항의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9.2 심사계획

KAB-R-01의 9.2항의 모든 요구사항과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9.2.1 인증기관은 이 기준 [부속서 F]에 의한 범주 및 업종의 관점에서 인증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조직의 프로세스, 업종, 제품 또는 서비스가 녹색경영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증범위로부터의 프로세스, 업종,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일부를 제외하지 않아야 한다.

녹색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5

9.2.2 인증기관이 기 인증고객에 대한 인증을 고려하는 경우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a) 환경경영체제를 인증 받은 조직이 타 인증기관에서 녹색경영체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인정기준 적용지침(KAB-A-02)'에 따른 환경경영체제 인증으로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 b) 녹색경영체제를 인증 받은 조직의 타 인증기관으로의 전환은 녹색경영체제 최초인증 또는 인증기관 전환 후 최근 3년 이내에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비고 해당 인증기관의 정지, 취소 등 인증전환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환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이 인정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는 전환이 허용될 수 있다.

9.2.3 심사팀에는 해당 업종의 산업적 특성 및 위험성을 근거로 인증기관이 자격을 부여한 심사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업종에 대한 산업적 특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이란 해당 업종의 인증수행범위에 적합한 범위를 보유한 심사원을 의미한다.

9.2.4 다수의 인증수행범위를 가진 업체를 심사하는 심사팀에는 해당 업체의 주된 산업적 특성에 대한 적격성을 보유한 심사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심사팀 구성 또한 9.2.3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9.3 최초인증

KAB-R-01의 9.3항의 모든 요구사항과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9.3.1 인증기관은 녹색경영체제에 대한 1단계 심사가 고객의 사업장에서 수행되고, 1단계 심사의 결과가 2단계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음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3.2 1단계와 2단계 심사의 간격은 통상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1단계 심사를 다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9.4 심사 수행

KAB-R-01의 9.4항의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9.5 인증 결정

KAB-R-01의 9.5항의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녹색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5

9.6 인증 유지

KAB-R-01의 9.6항의 모든 요구사항과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9.6.1 인증기관 또는 인증심사원이 인증고객과의 부정행위로 처분된 경우, 인증기관은 해당 인증고객에 대한 후속조치를 계획하고 조치결과를 인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9.7 이의제기

KAB-R-01의 9.7항의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9.8 불만

KAB-R-01의 9.8항의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9.9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록

KAB-R-01의 9.9항의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10. 인증기관의 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KAB-R-01의 10항의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녹색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5

[부속서 A] 지식 및 숙련도/기량 요구사항

KAB-R-01의 부속서 A의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부속서 B] 평가방법의 예 (참고사항)

KAB-R-01의 부속서 B의 모든 조항을 적용한다.

[부속서 C] 적격성 결정 및 유지를 위한 프로세스 흐름의 예 (참고사항)

KAB-R-01의 부속서 C의 모든 조항을 적용한다.

[부속서 D] 바람직한 개인의 행동 (참고사항)

KAB-R-01의 부속서 D의 모든 조항을 적용한다.

[부속서 E] 심사 및 인증 프로세스 (참고사항)

KAB-R-01의 부속서 E의 모든 조항을 적용한다.

녹색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5

[부속서 F] 인증기관의 인증수행범위

인증수행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2008년)
01	농·수산업	01, 02, 03, 7430
02	광업 및 채석업	05, 06, 07, 08(0809 제외)
03	음식료 및 담배	10, 11, 12
04	섬유 및 섬유제품	13, 14
05	가죽 및 가죽제품	15
06	목재 및 목재제품	16
07	펄프, 종이, 종이제품	17
08	출판업	581, 59201
09	인쇄업	18
10	코크스제조 및 석유정제품	19
11	핵연료	20129, 24219 중 핵연료 가공업과 관련된 산업만 해당
12	화학약품, 화학제품, 섬유류	20(단, 20129 중 핵연료 가공업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
13	의약품	21
14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22
15	비금속 광물제품	23(233 제외)
16	콘크리트, 시멘트, 석회, 석고 등	233
17	기초 금속 및 조립금속 제품	24(단, 24129 중 핵연료 가공업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 25(252 제외)
18	기계 및 장비	252, 285, 29(2918 제외), 9511
19	전기 및 광학기기	26, 27, 28(285 제외), 2918
20	선박	311
21	항공	313
22	기타 수송장비	30, 312, 319
23	기타 제조업	32, 33
24	재생	383
25	전기공급	351
26	가스공급	352
27	수도공급	353, 36
28	건설	41, 42
29	도소매업, 자동차, 오토바이 수리,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	45, 46, 47, 95(95121 제외)
30	숙박 및 음식점	55, 56
31	운송, 창고, 통신	49, 50, 51, 52, 61, 75
32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	64, 65, 66, 68, 69
33	정보기술	582, 62, 63(6391 제외), 95121
34	엔지니어링 서비스	70, 721
35	기타 서비스	0809, 39, 71, 729, 73(731 제외), 74, 75
36	공공행정	84
37	교육	85
38	보건 및 사회복지	731, 86, 87
39	기타 사회 서비스	37, 38(383 제외), 59(59201 제외), 60, 6391, 90, 91, 94, 96, 97, 98, 99

녹색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5

[부속서 G] 인증심사일수

이 부속서는 녹색경영체제 인증심사를 위한 심사일수를 규정한 기준이다. 심사일수는 인증신청/인증 조직의 종업원 수(정규직, 비정규직 및 일용직)에 출발점을 두고 있기는 하나 단독 고려사항은 아니며 심사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자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아래의 표는 녹색경영체제 최초 심사일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부속서에 제시되지 않은 일반적인 심사일수에 관한 기준 등은 KAB 인정기준 적용지침 : 제2부의 5장을 적용한다.

<녹색경영체제(GMS) 최초 심사일수>

유효한 종업원 수	심사 기간 1단계+2단계(일수)				유효한 종업원 수	심사 기간 1단계+2단계(일수)			
	높음	중간	낮음	제한		높은	중간	낮음	제한
1-25	2.5	2	2	2	1176-1550	10	8	6	4
26-45	3	2.5	2	2	1551-2025	10.5	8.5	6	4
46-65	4	3	2.5	2	2026-2675	11.5	9	6.5	4.5
66-85	4.5	3.5	2.5	2.5	2676-3450	12.5	9.5	7	4.5
86-125	5.5	4	3	2.5	3451-4350	13.5	10	7.5	5
126-175	6	4.5	3	2.5	4351-5450	14	10.5	8	5.5
176-275	6.5	5	3.5	3	5451-6800	15	11.5	8.5	6
276-425	7.5	6.5	4	3	6801-8500	16	12.5	9.5	6.5
426-625	8	6.5	4.5	3	8501-10700	17	13.5	10	7
626-875	8.5	6.5	5	3.5	>10700	위와 같이 증가			
876-1175	9.5	7.5	5.5	3.5					

비고 1 심사 기간은 높음, 중간, 낮음, 제한의 복잡성 심사를 보여준다.

비고 2 표 1의 종업원수는 연속적으로 변화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고 3 인증기관은 종업원 수가 10,7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심사일수를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심사일수는 표 1의 수열을 일관된 방식으로 따라야 한다.

비고 4 상기의 녹색경영체제 최초 심사일수는 표 1의 EMS 심사일수 이외의 심사일수를 말한다.

비고 5 상기 심사일수표는 성과지표 심사를 위한 추가적인 0.5인·일을 포함한다. 단, 성과지표 심사를 위해 요구되는 충분한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인증기관의 책임이며 조직의 특성 및 프로세스 등을 근거로 0.5인·일을 조정할 수 있다.

비고 6 EMS에서 GMS로의 업그레이드 심사일수는 GMS 최초심사일수와 동일하다.

녹색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5**부칙**

1. 이 기준은 (재)한국인정지원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사)한국인정원으로부터 녹색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인정된 자는 이 기준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본다.
3.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사)한국인정원의 인정기준에 따라 진행된 최초, 정기사후관리, 갱신, 인증수행범위 추가 심사는 이 기준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본다.
4. 동 인정기준 7.2항 및 9.1.3.1항에 대한 [KAB 지침]은 2014. 7. 1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인증기관이 자체적으로 자격을 부여한 인증심사원을 보유, 활용할 수 있다.

부칙

1. 이 기준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인증수행범위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의 (사)한국인정원 녹색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KAB-R-15, Issue No.2)의 부칙에 따라 인정된 녹색경영체제 인증수행범위 중 입회심사가 수행되지 않은 필수입회코드(10, 11, 12, 17, 28, 39)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동 기간 종료 후 필수입회코드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필수입회코드에 대한 인정은 취소된다.

부칙

1. 이 기준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녹색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5

부칙 <공고 제2014-60호, 2014.11.06>

1. 이 기준은 2014년 11월 6일로부터 시행한다.
2. (심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7.2.2항 및 9.1.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원보의 자격을 가진 자를 심사원으로 본다.

부칙 <공고 제2015-25호, 2015.04.15>

1. 이 기준은 2015년 4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고 제2015-48호, 2015.07.20>

1. 이 기준은 2015년 08월 03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고 제2016-34호, 2016.07.20>

1. 이 기준은 2016년 8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